

1. 개정이유

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개정(법률 제18881호, 2022. 6. 10. 공포)으로 숲경영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 승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(하위법령 제때 마련)

2. 주요내용

가.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 작성 요건 마련(안 제19조의3제1항)

시설물의 종류·규모, 시설계획, 시설물종합배치도 등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작성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

나. 숲경영체험림 조성·변경계획 승인신청서 서식 추가(안 제19조의3제2항 관련 별지 제8호의2)

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 서식 추가

다. 숲경영체험림 조성·변경계획 승인에 따른 고시(안 제19조의3제4항)

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시 명칭·위치·면적, 시설물의 종류·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특이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3. 17. ~ 4. 26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- 규제 신설 등 있음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3(숲경영체험림의 조성계획 작성 등)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

따른 숲경영체험림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(이하 “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시설물(도로를 포함한다)의 종류·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
2. 시설물종합배치도(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)
3.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
4. 숲경영체험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
5. 산림경영계획(숲경영체험림 조성자격 확인을 위한 산림경영계획서 포함)

②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설의 종류·규모·배치, 자연 경관의 보존,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 밖의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숲경영체험림 조성목적에 부합되는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·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숲경영체험림의 명칭·위치·면적, 시설물의 종류·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, 시설물종합배치도,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.

제19조의3을 “제19조의4”로 제19조의4를 “제19조의5”로 한다.

별지 제8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숲경영체험림 [] 조성계획 []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90일
------	-----	-----	----------
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(기관명)	전화번호

산림 소재지		구역면적	ha
숲경영체험림의 명칭			

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,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숲경영체험림 []조성계획 []조성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서(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가. 시설물(도로를 포함합니다)의 종류·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나. 시설물종합배치도(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) 다.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라. 숲경영체험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마. 산림경영계획(숲경영체험림 조성자격 확인을 위한 산림경영계획서 포함) 2.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청인	처리기관 시·군·구
신청서 작성	접수 및 현지조사
	↓
	검토·확인
	↓
	승인
	↓
통보	승인서 작성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9조의3(숲경영체험림의 조성계획 작성 등)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(이하 “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<u>1. 시설물(도로를 포함한다)의 종류·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</u> <u>2. 시설물종합배치도(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)</u> <u>3.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</u> <u>4. 숲경영체험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</u> <u>5. 산림경영계획(숲경영체험림 조성자격 확인을 위한 산림경영계획서 포함)</u> <u>②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</u>

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설의 종류·규모·배치, 자연 경관의 보존,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 밖의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숲경영체험림 조성목적에 부합되는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·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숲경영체험림의 명칭·위치·면적, 시설물의 종류·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, 시설물종합배치도,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.

제19조의3(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에 대한 특례) 제13조제1항·제14조제2항·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,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자연휴양림의 지정, 자연휴양림조성계획

제19조의4(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에 대한 특례) (현행 제19조의3과 같음)

의 승인·승인변경,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및 산림육장등조성계획의 승인·변경승인을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9조의4(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)

①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·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(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고,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장(이하 “숲길관리청”이라 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9조의5(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)

(현행 제19조의4와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복지정책과	
연 락 처	(042) 481-1815